



건설공사의 부실별점제도 해설

김 근 성 대한건설협회 공사관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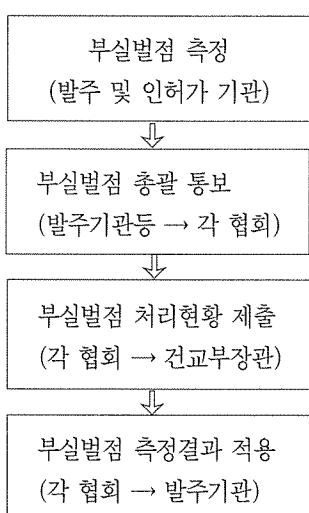
1. 도입배경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부실용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해당건설업체 · 용역업체 및 관련기술자등에게 부실별점을 부과하고, 부실별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시 감점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음.

2. 부실별점 관리 체계

○ 흐름도



- 측정대상 :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측정일시 : 매반기 말까지 측정
(예 : 6월30일, 12월31일)
- 통보일시 : 매반기 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부실별점총괄표
통보
(예 : 1월15일, 7월15일)
- 위탁관리 : 부실별점 누계관리
- 제출일시 : 매반기 말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현황 제출
(예 : 1월31일, 7월31일)
- 적용일시 : 매반기 1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
개월간 적용
(예 : 3월1일, 9월1일)

3. 부실벌점 측정 및 관리

가.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관리)
 - 제13조의6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 * 동법 시행규칙(별표8) 건설공사 등의 부실 벌점관리기준

나. 측정 대상공사

- 토목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 10,000m² 이상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다. 측정 및 벌점 부과자

- 건설교통부 장관, 발주자, 행정기관의 장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한 기관의 장)

라. 부과 대상자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등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 위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
-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 대상자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하여 부과

-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분담업체별로 시공부분에 대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담한 업체에 각각부과)

마. 측정 및 적용시점

- 부실벌점측정시점 : '95.10.12
(시행규칙시행)
※ '95.10.12 이전 준공된 용역 및 공사는 제외
- 적용 시점
 - 업체 : '96. 9. 1부터
 - 건설기술자 : '97. 9. 1부터
 - 매반기말 기준 2개월 경과한 6개월간
(3.1-8.30, 9.1-2.29)

바. 부실벌점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 측정기관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의 부실측정기준에 정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벌점을 부과 한다.
- 당해 반기에 동일업체의 2건 이상의 공사를 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한 부실벌점을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3년간의 평균부실벌점을 합계하여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 점검시 지적내용과 부실사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부실사례의 벌점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 세부 부실 측정기준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 측정기준) : <별첨 1> 참조

※ 계산 방법

○ 당해 현장별 부실별점 =

현장점검 등 부실별점합계 - 경감점수

○ 발주기관별 평균부실별점 =

$$\frac{\text{당해현장별 부실별점합계}}{\text{점검현장수}} - \text{경감 점수}$$

○ 반기별 평균부실별점 =

$$\frac{\text{발주기관별평균부실별점합계}}{\text{통보발주기관수}} - \text{경감 점수}$$

○ 누계 평균부실별점 =

$$\frac{\text{최근3년간(6반기)평균부실별점합계}}{2}$$

⑤ 시공능력평가결과 당해업체의 평균점수

가 90점 이상인 업체 (2점 경감)

⑥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3점 경감)

○ 반기별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별점에서 경감

⑦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된 경우 (5점 경감)

⑧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이상
의 표창을 받은 경우 (3점 경감)

○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업체에 대한 부실별점
의 경감은 1년간 해당업체에 적용하며, 표창
의 경우에는 1회만 적용한다.

○ 시공능력평가결과 당해업체의 평균점수가 90
점 이상인 업체 및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된
경우의 감점기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기 두 가지 감점기준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우수건설
업체로 선정된 경우의 감점기준만을 적용한
다.

사. 별점 경감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발주청에서 당해현장에 부과한 부실별점에
서 경감

① 최신공법의 적용 (2점 경감)

② 구조물에 대한 최신기법 계측관리 철저
(1점 경감)

③ 최신 공사관리기법 적용 (1점 경감)

④ 매몰부분 및 완성구조물 검증 등 기록철
저 (사진 등) (1점 경감)

○ 발주청이 집계한 반기별 평균부실별점에서
경감

아. 측정결과의 조치

(1) 부실별점측정시 벌점부과 대상자에게 통보

-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측정시 벌점부과 내역
을 벌점부과 대상자인 건설업체 등에 통지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 부
실별점관리기준 4호 마).

(2) 부실별점관리 총괄내역 해당협회 통보 (시행 규칙 제13조의5 제3항)

-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별점 총괄내역을 매분
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아래 구분
에 따라 각각 분류 통보하여야 함 (1월15
일, 7월15일).

• 건설업자 : 대한건설협회

- 건설 기술자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 감리 전문회사 : 건설감리협회
 - 주택건설등록업자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설계 등 용역 업자 : 한국기술사회, 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에 의한 부 실벌점 종합관리 업무를 동법시행령 제61조로 해당협회에 업무위탁

4. 부실벌점적용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부 실 벌 점	제 한 내 용
20점 이상 50점 이하	1월 이상 6월 미만 입찰제한
50점 이상 100점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제한
100점 초과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제한

나.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시 감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누계 부실 벌점	감산 점수	비 고
3점 이상 5점 미만	0.5	○ 시공능력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서 감점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20점 미만	1.5	
20점 이상	2	

다.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감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건교부 건안 제58826-35호: '98.2.27)

누계 부실 벌점	제 한 내 용
2점 이상 10점 미만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1% 감액
10점 이상 15점 미만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2% 감액
15점 이상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3% 감액

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사전심사시 신인도 감점	10점
--------------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고 제1988-10호 : '98.2.20)

누계 부실 벌점	감 산 점 수
2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20점 미만	2
20점	3
20점 초과	10

※ 주택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누계 부실 벌점	감 산 점 수
2점이상 10점 미만	1
10점이상 20점 미만	2
20점이상 30점 미만	3
30점 초과	10

5. 부실벌점 업무처리시 유의 사항

가. 발주자

- 발주자 등 측정기관은, 측정대상 공사현장 선정 및 부실점수 산정시, 측정자 또는 측정 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실 벌점 측정의 적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노력 필요.
- 부실벌점측정시 벌점부과내역을 벌점부과대상자인 건설업체 또는 기술자 등에게 통보 하여야 함.
- 부실벌점측정 결과 0점으로 측정된 경우에도



총괄내역에 포함하여 해당협회에 통보하고, 경감기준에 해당하는 “우수건설업체 선정 및 표창내용 등”도 통보하여야 함.

- 부실별점측정시 세부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별 점을 산정하고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여야 함.

나. 시공자 등

- 부실별점 측정결과는 해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 해당업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주기관의 부실별점측정시 참여하여 확인하는 등의 노력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세심한 노력 필요.
- 부실별점측정시 측정기관으로부터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 부실별점관리기준 4호 마”에 따라 해당업체에 통보되는 별점부과내역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 필요.
 - 세부측정기준에 따른 부실별점 산정내용 및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내용 등 확인.
 - 6개월마다 별점이 산정통보 되므로, 회사내 담당을 지정하여 일률적인 관리 필요.

6. 맷음말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행된 부실별점제도가 아직은 도입초기 단계로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측정단계에서는 ① 측정대상 공사현장 선정문제 ② 측정내용에 대한 부실점수 산정시 측정자 또는 측정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배점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며, 산정 및 관리 단계에서는 ① 누계부실별점을 산정하는 기간이 3년으로 경미한 지적에 의한 부실점수의 영향을 장기간 받는 관계로 성실시공을 통한 만회가 어렵고 ② 부실별점이 여러분야에 적용될 뿐 아니라 여타 법령의 Penalty에 비하여 너무 무겁다.

○ 따라서 측정기관에서는 측정결과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배점될 수 있도록 관계자 회의 등 (심사 등)을 거쳐 부실별점을 확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실제 몇몇 발주기관에서 시행중 임), 공사를 잘하는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도 적극 활용하여 잘하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다는 희망을 줌으로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실시된 부실별점 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살려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유도하여,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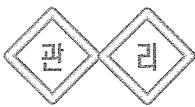
별첨. 1

※ 세부 부실 측정기준 ('96.1 : 시행규칙 제13조의6 관련 〈별표8〉에 의함)

-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별점 측정기준

- (1) 1급은 부실내용이 비교적 심하거나, 부실개소수가 많은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5점 내지 6점을 부과
- (2) 2급은 1급보다 부실정도가 비교적 덜한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3점 내지 4점을 부과
- (3) 3급은 부실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1점 또는 2점을 부과

번 호	주 요 부 실 사 레	적용등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둥·보·슬라브 등 주요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 - 구조안전에는 위험이 없으나 균열의 발전이 예상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할 때 - 구조안전에 지장은 없으나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재료분리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구조부 철근의 노출 또는 재료분리가 직경 1m 이상 발생, 구조상 위험이 있을 때 - 주요구조부 재료분리가 직경 1m 이상인 경우 - 주요구조부 재료분리가 직경 0.5m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상태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불량으로 구조물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배수불량으로 구조물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방수구조물에서 전면보수를 요하는 경우 - 주요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이상 보수를 요하는 경우 - 액체방수 등 간이보수를 요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5	○ 건설공사후 발생한 폐자재의 처리상태 불량	3
6	○ 공사 뒷마무리·정리상태 불량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매설물에 대한 검측 불철저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 주요구조부위 검측 불철저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거부하여 감리(감독)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 건설기술관리법 제13조의2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1항8호나항목 적용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상세도면 작성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사례 발생시 - 기타 구조물에 대한 시공상세도 작성 부적정으로 보완시공사례 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3
9	○ 공정관리 소홀로 공정부진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 등 인근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 공사중 부주의로 인한 민원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거푸집 등)의 설치상태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 구조물이 허용치 이상 변형되거나 보완지시 미이행 - 설치상태 불량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사용 위험·안전표지판의 설치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3



번 호	주 요 부 실 사례	적용등급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방재대책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소홀로 공중에 혼자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방재대책 소홀로 민원발생시 (단, 천재지변시 제외) - 공사착수전 방재·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계획 미수립 - 품질관리계획 수립상태 부적정 - 품질관리 실시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실 규모, 시험장비, 시험·검사요원의 확보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장비 미설치 및 시험요원 배치소홀 - 시험실 및 장비설치 및 시험요원자격 기준미달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실시가 곤란하거나 규정에 의한 검사미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용 자재의 관리상태 불량 	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타설 및 양생과정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중·한중 콘크리트 타설계획 미수립, 경화이전 거푸집 해체 등으로 구조물에 변형 발생시 - 주요구조물용 콘크리트 배합설계 미실시 및 불량콘크리트 타설시 - 시공관리소홀 및 양생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미콘 및 아스콘플랜트의 현장관리상태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배합 미실시, 계량장치 미검정, 물재규격별 분리저장 미실시, 자동기록장치 미작동 및 기록지 미보관, 가수행위 등 - 골재관리상태 미흡, 아스콘 생산온도 부적정 - 관리시험 부적정, 장비결함사항 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 부족이 허용치 초과시 - 침하, 균열발생시 - 혼합물 온도관리 불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공사에서 동일사유로 시정명령을 2회 받은 경우 - 동일공사에서 시정명령 2회 받은 경우 - 동일공사에서 시정명령 1회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사항외에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 설계상 허용오차를 벗어나게 시공한 경우 - 미관상 불량하게 시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측정기관이 부실이라고 판단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시공 - 보완시공 - 기타 경미한 과실이라고 판단되는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